

(의안번호 제2007-61호)

2007.12.6~12.12
제14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2008년 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한]

<의안번호 제2007 - 61호>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07. 11. 20.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 부 일 자 : 2007. 11. 20.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2008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

나. 운용방침

- 자금운용체계의 이원화(총괄, 운영부서)로 책임, 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기획감사실, 운용부서(각 기금관리 운용 실.과))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총괄>

기 금 명	2007년말 현 재 액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7 개	2,748,547	780,641	500,856	279,785	3,028,332
식품진흥기금	27,832	25,700	43,532	△17,832	10,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32,476	68,355	20,600	47,755	480,231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137,431	400,362	346,084	54,278	191,709
노인복지기금	1,007,977	46,000	40,000	6,000	1,013,977
여성발전기금	681,297	188,180	30,000	158,180	839,477
아름예술헌진흥기금	430,005	50,640	20,640	30,000	460,005
체육진흥기금	31,529	1,404	0	1,404	32,933

5. 검토의견

■ 종합민원실(p6)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년말 현 재 액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식품진흥기금	27,832	25,700	43,532	△17,832	10,000

- 식품진흥기금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27,832천원이며, 수입 25,700천원, 지출 43,532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000천원임.
-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중 과징금 등 기타 잡수익의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임차료 지원 1,5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생활지원과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년말 현 재 액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32,476	68,355	20,600	47,755	480,231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137,431	400,362	346,084	54,278	191,709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p12)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음.
- 지원기준(대상)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액은 432,476천원으로 수입 68,355천원, 지출 20,600천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80,231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p19)

-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7,431천원이며, 수입 400,362천원, 지출 346,084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91,709천원이 되며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년말 현 재 액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노인복지기금	1,007,977	46,000	40,000	6,000	1,013,977
여성발전기금	681,297	188,180	30,000	158,180	839,477

◆ 노인복지기금(p26)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거창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07,977천원이며, 수입 46,000천원, 지출 40,000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13,977천원이 되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2008년도 지출내역에서 노인복지 공모사업 4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발전기금(p33)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및 거창군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당초 조성목표액이 5억원을 2006년도에 달성하였으며, 목표액 적립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연 20,000천원)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실시 지원금으로 부족하여 2007년에 기금규칙을 개정하여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681,297천원이며, 수입 188,180천원, 지출 30,000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39,477천원이 되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관광과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년말 현 재 액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아름예술제진흥기금	430,005	50,640	20,640	30,000	460,005
체육진흥기금	31,529	1,404	0	1,404	32,933

◆ 아릅예술제 진흥기금(p40)

- 아릅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릅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릅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 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매년 아릅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액 430,005천원이며 수입50,640천원, 지출 20,640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0,005천원임.
- 향후 기금의 사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기금(p45)

-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규정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1,529천원으로 수입 1,404천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3,933천원임.
- 향후 기금 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자료 (기금설치·운용조례)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조성)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 3조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3.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4.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 4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종합민원실장(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 5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 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 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필요한 사항

제 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 1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 12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4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탁금
3.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제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내의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보장담당주사

제 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장학생의 자격)

- ①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 ② 특별장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학생중 이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9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지출계획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 10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11조 (지급정지)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미만일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② 군수는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 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1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기타 수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

③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군 노인 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 6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책무)

①군수는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 3조 (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 5조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군의회 의원 1인,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 6조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원하는 경우

제 8조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 (회의)

-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 (의견청취 등)

-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업무담당자가 된다.

제 12조 (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거창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여성발전기금

제 13조 (설치)

①군수는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 14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 15조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 16조 (운용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 17조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 19조 (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2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11.22 조례 제1652호 신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립예술제(이하 "아립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립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 "아립제"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 ② "아립예술제위원회"는 "아립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립제 행사 잉여금
 3. 기타 수입금
- ② 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관리)

- ① 기금은 거창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립제진흥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 13)

제 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아림제 행사추진
2.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제 6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9. 2. 13)

제 7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 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 2. 13)

② 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 하여야 한다.

제 8조 (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납 및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 (기금지급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아림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림제 위원회에 지급한다.

② 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폐쇄기간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2. 13)

제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94년부터 아림제진흥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수입
4. 기타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관내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방체육 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제 5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원한다.

제 6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

제 7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